

2016년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안)

서대문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구성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모개요

공모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공동체의 유대관계 증진,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2016. 3월 ~ 11월	

2. 응모자격

-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국가 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동일(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
 -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3.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18,200,000원
- 지원항목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00만원 ~ 700만원 이내
 - 지원 금액은 서대문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금)~2월 17일(수) 까지
- 신청서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www.sdm.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접수방법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 ※ 근무시간(09:00~18:00) 이내
 - 이메일(sdmg1530@sdm.go.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회원 명부 각 2부
 -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각 2부(사본)

5. 선정 및 통보

- 선정결과 발표 : 2016. 3월말[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문화예술 활동실적,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사회단체 선정 시 사업별로 심의·평가하여 선정·지원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는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며,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 만큼 감액 후 교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 사업완료 시 추진실적, 정산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7. 유의사항

-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의 표절 등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금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문의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담당 정원식 ☎ 330-1423